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39호, 2020. 2. 18 공포, 2020. 8.19 시행)됨에 따라 경영상태평가 방법,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상태평가 방법(안 제2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위임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경영상태평가 방법은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하고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부문별평가 및 중

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

나. 부실우려조합의 재무상태 기준(안 제4조)

법 제2조제4호에서 위임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그 기준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으로 규정함.

다.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안 제6조)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을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및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으로 규정함.

라. 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중앙회 임직원을 관리

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 상태 평가 방법)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 방법은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한다.

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상태 기준)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 상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분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경영위험평가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기준·절차·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는 경영위험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통해 정상조합에 통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조합에 대한 통지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 지정기준) 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1.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경영관리대상조합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시정요구 기준) 법 제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 이하이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실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3. 신용사업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제9조(시정요구 절차 등) ① 경영관리대상조합은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조치 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수정·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종료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요구의 종료를 알려야 한다.

제10조(계약이전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법 제11조제6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별표 4와 같다.

제11조(관리인의 선임 및 업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실조합등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리인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인이 관리인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관리인 해임건의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여 직무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관리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기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해진 것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

(제3조 관련)

1. 기본원칙

- 가. 조합의 부채와 자산의 각 항목별 평가 및 산정방법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재산평가는 상호금융회계와 신용부문 및 일반사업부문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각 회계별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결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결합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는 내부거래는 차감계상한다.
- 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기업회계기준, 수협회계규정(예), 기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회계관습 등에 의한다.
- 라. 관리기관장은 이 기준에 의해 평가한 재산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평가결과보고서 양식은 관리기관장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2. 평가 및 금액산정 기준

가. 현금 및 예치금

- 1) 현금 및 외국통화는 현금 및 외국통화 시재명세표에 의거 확인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통화는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2) 예치금은 예치기관의 잔액증명서에 의거 확인하고 수협중앙회에 대한 예치금은 중앙회의 전산자료 확인으로 대서한다.
- 3)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치금(영업정지된 금융기관 관련 예치금 등)의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반영한다.

나. 유가증권

1) 주식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최근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순자산가액 중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특별채권(화의, 법정관리, 기업개선작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의개시 결정 등으로 회생이 가능하면 “회수의문”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2) 주식외의 채권(사채, 국·공채) 및 기타증권(수익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평가한다. 시가는 기준일의 종가로 평가하되 기준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자산건전성분류 및 평가기준”에 따라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된 채권 및 기타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예상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 대출금

1) 대출금에 대한 평가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정책자금대출, 초과대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회수예상가액의 산정은 [별첨1]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가. 정책자금대출금은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분류한다.

나. 초과대환대출금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연체가 없거나 3개월미만 연체인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기산일을 대환전대출금의 연체기산일부터 적용하여 연체기간에 의하여 건전성을 분류한다.

- 2) 이 기준에서 “초과대환대출금”이라 함은 구계좌의 상환을 위하여 개설된 대출(“대환대출”)로써 구계좌가 대환전에 1개월이상 연체이고 상환원금을 초과하여 대환이 이루어진 대출금을 말한다.

라. 매수인 제외 경제사업채권

- 1) 매수인 제외 경제사업채권의 연체기산일은 납입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최종거래일(미회수채권 거래일 중 가장 빠른 날), 납입기한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납입응당일의 익일로 한다.
- 2) 매수인을 제외한 경제사업채권의 건전성 분류는 “3. 대출금”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르되, 상호금융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과 비교하여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한다.

마. 매수인채권

- 1) 매수인채권의 연체기산일은 최종거래일로부터 16일이 되는 날로 한다.
- 2) 최종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 3) “거래한도”는 매수인거래약정서의 외상거래한도에 불구하고 담보평가액의 120%로 한다.
- 4) 매수인채권의 건전성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되, 상호금융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과 비교하여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한다.
 - 가) 실사기준일 현재 잔액이 거래한도이내인 경우는 정상으로 분류한다.
 - 나) 실사기준일 현재 잔액이 거래한도를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대출금”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분류 기준을 따른다.
 - 다) 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첨 1]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을 평가가치로 한다.

바. 일반사업부문의 가지급금

- 1) 경제사업채권관련 가지급금은 주채권의 분류에 따른다.
- 2) 경제사업채권관련 가지급금외의 가지급금은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 일반부문의 기타미수채권

- 1)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자산건전성과 비교하여 더 불량한 등급을 적용한다.
- 2) 여신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다. 대출금”의 연체기간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른다.

아. 재고자산

- 1) 재고자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에서 감모손실금액을 차감한 후 각 재고자산별 최근시가를 평가가치로 한다.
- 2) 감모손실금액은 매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고자산과 실제 부족분으로 한다.

자. 업무용자산

- 1) 업무용자산은 매각예정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매각예정 자산의 평가가치는 [별첨 1]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 2) 매각계획이 없는 업무용 토지의 평가는 실사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으로 한다.
- 3) 매각계획이 없는 업무용자산
 - 가) 업무용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 나) 업무용자산 취득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에

서 국고보조금 잔액을 차감한다.

차. 비업무용 자산

비업무용 자산의 평가는 [별첨 1]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에 의한 회수예상가액으로 한다.

카. 무형자산

- 1) 어업권 및 기부채납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에서 [별첨 2]의 『법인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산출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에서 국고보조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2)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평가한다.

타. 외부출자금

중앙회출자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기타출자금은 해당 회사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한다.

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평가는 대차대조표상 금액에서 국민연금전환금과 퇴직 보험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하. 우발채무

- 1)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대상 금액을 손실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가) 패소경험이 있는 사건
 - 나) 담당자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
 - 다) 변호사가 패소를 예상하는 사건

(별첨 1)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보종류		산정액	비고
예·적금, 출자금		불입액의 100%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유가 증권	상장주식	대용가격의 100%	한국증권 거래소 공시
	상장채권	대용가격의 100%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100%	
지급 보증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금액의 100%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부투자기관보증		
부동 산등	대지	공시지가의 100%	국토교통부 공시
	건물	건축신축단가표의 100%	
	아파트	시가의 70%	
	자동차, 중기, 선박 등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연 수로 나눈금액을 매년 정액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기계, 기구류		
기타		시가의 70%	
경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조합 자체 내규에서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을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산정한다.
1.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년수/내용년수)를 말하며, 관련 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차감한다.
1.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금융투자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① 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 ② 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 ③ 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1.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① 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 ② 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별첨 2)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건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건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frac{\text{총자산}^{1)} - \text{총부채}^{1)} - \text{출자금}^{2)} + \text{대손충당금}^{3)}}{\text{총자산} + \text{대손충당금}} \times 100$$

1) 조합의 전체사업에 대한 총자산 및 총부채를 말한다.

2) 조합원 탈퇴시 자산·부채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3) 조합의 상호금융채권과 경제사업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 (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을 말한다.

[별표 3]

경영위험평가의 기준·방법·절차

(제5조제1항 관련)

1. 경영위험평가 시기 : 매월

2. 경영위험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경영위험평가는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로 구분한다.

나.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

1) 이상징후지표는 부실발생 개연성이 있는 특정사업부문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영위험수준을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를 말한다.

2) 이상징후지표로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종합)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고정자산비율, 경영실태평가결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경제)사업채권회전율, 사업원가율, 총자산경비율, (상호)연체채권비율, 요주의이하채권비율, 총가용자금비율, 명목순이자마진율, 총자산경비율, 총자산순이익율, 수지비율이다.

3) 이상징후지표에 의한 평가결과 예측 수준

구분	정 의
관심	평가결과 부실가능성은 낮으나 특정사업 부문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조합
주의	평가결과 부실가능성은 낮으나 특정사업 부문에서 변동폭이 큰 조합
위험	평가 결과 특성사업 부문에서 변동성이 크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합

다.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평가

- 1) 부실예측모형은 조합의 경영위험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의 경영지표를 활용하여 부실확률을 예측하는 통계모형을 말한다.
- 2) 부실예측모형에 활용되는 경영지표는 (종합)단순자기자본비율, 단순고정자산비율, (경제)순자산영업이익률, 매출액변동계수, 영업활동수익변동계수, 지역위관금액비중, 자본영업활동수익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위관고정이하대충한도, 위관금액 증감률, (상호)영업수익순이익률, 충당후고정이하채권비율, 연체채권비율, 요구불예탁금비율, 대출채권대손전입율, 위험가중채권비율, 요주의이하채권비율이다.
- 3) 부실예측모형에 따른 부실점수 산출방식 및 등급판정 기준

가) 부실점수 산출방식

부실점수 산출은 종합장기부실점수와 종합단기부실점수를 40:60의 비중으로 종합부실을 산출한다.

나) 등급판정기준

구분	정의	부실점수
1등급 (우수)	경영상태가 매우 우수한 조합	-0.326미만
2등급 (양호)	경영상태가 양호한 조합	-0.326이상 -0.273미만
3등급 (보통)	부실위험이 낮고 경영상태가 보통인 조합	-0.273이상 0.046미만
4등급 (주의)	부실위험이 내재되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조합	0.046이상 0.266미만
5등급 (요주의)	부실위험이 다소 있으며,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0.266이상 0.588미만
6등급 (취약)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부실위험이 높아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0.588이상

라. 부실예측모형 평가지표 및 이상징후지표 세부산식

관리기관은 부실예측모형 및 이상징후지표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 4]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기준

(제10조 관련)

1. 자료의 보관·관리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당해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열람청구권

가.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등에 한한다.

나. 청구된 자료의 열람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고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열람청구방법

가. 청구인이 자료열람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주된 사무소에 자료내용 및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자료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자료의 열람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다. 열람결정 통지는 구두로 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자료열람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열람 불가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자료열람 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5. 열람제외 대상자료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자료

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다. 기타 열람을 허용할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6. 기타

가.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의 교부 등에 의한다.

나. 열람인은 열람한 정보를 청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조합은 자료열람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